



FMD,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

대한한돈협회



우137-8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-19 제2축산회관 3층 / ☎(02)581-9751 ~ 4, 8 / Fax581-9768 ~ 9 담당:농가지원부

문서번호 한돈협지 310-3호

시행일자 2024. 01. 31.

수신 임원 및 지부(회)장

참조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		결재	
	시간			
	번호		공람	
	처리과			
	담당자			

제목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 및 변경신고 관련 내용 안내

1. 최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지사체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사유로 가축사육두수 감축요구를 하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해당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질의 회신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부(회)에서는 해당사항을 회원농가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질의 및 답변사항

양돈분뇨 배출량 산정기준 및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
1.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산정할때에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 기준은 ?
- 축산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 산정

2. 만약 사육두수가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이라고 하면 농장 가축분뇨 배출량이 사육두수 × 배출원단위 × 30%이내인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필요 없이 배출이 가능한지?
-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,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됨으로 100분의 30미만의 경우 변경신고대상이 아님

붙임. 환경부 유권해석 원문 (수질수생태과-329)



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